

廢棄物法制의 資源化



安 基 熙

〈本協會 연수부教授〉



I. 廢棄物의 새로운 認識

현재 뉴욕을 비롯한 전세계 大都市들은 廢棄物處理에 크게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경우도 내년쯤이면 天惠의 廢棄物埋立地인 「난지도」가 더이상埋立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위에다 새로운 廢棄物동산을 만들겠다는 서울市의 계획이 법령상의 협의절차 규정인 環境影響評價過程에서 전면 수정을 당하는가 하면, 한편 環境廳은 重金屬이 함유된 產業廢棄物의 處理를 自由企業의 경쟁원리에 맡기지 않고 資源再生公社로 하여금 집중 관리하게 함으로써 원료의 사용에서부터 종말처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都市化와 產業化에 따른 人口의集中, 기술의 발달, 大量生產과 大型消費體制에서는 廢棄物의 增加問題는 필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問題는 이러한 廢棄物의 增大量에 비하여 지금까지의 處理當局의 안이한 思考方式 즉, 國土의 效率的 管理의 측면에서 발생에서 부터 종말처리까지의 일관된 시스템에 의존해 왔다가 보다 사후처리 위주의 단순매립에 의존해 왔거나 아직도 廢棄物을 귀찮은 處分概念에 젖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독성 폐기물이 人間界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위험성이 점차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적기술, 시설설치, 모니터링제의 신설, 처리요원의 양성등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廢棄物의 단순매립과 不適處理에 의한 「Love Canal事件」 이후 특히 유독성 廢棄物의 관리와 처리에 큰 轉換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Love Canal事件」보다도 훨씬 더 심한 독성 廢棄物 투기사건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니 큰 경종이 아닐 수 없다.

1979년 당시 카터 정부가 임산부 15명 중 13명이 유산·사산, 기형아, 미진아를 출산케 한 「Love Canal 사건」을 해결하고 전국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議會에 19억불이란 막대한 예산을 요청하여 1980년까지 제1, 2차에 걸쳐 1,037 세대를 긴급 이주시켰던 것이다. 그후 유독성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를 실험하기 위하여 똑같은 쥐를 그곳과 다른 안전한 곳에 분리하여 생육한 결과 오염된 곳의 쥐는 오염되지 않



〈가정에서 배출된 각종 폐기물〉

은 곳의 쥐보다 생명이半滅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는 폐기물의 단순매립에 의한 해독이 너무나 끔찍하고 지속적이라는데 큰 충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들은 廢棄物의 處理에 대한 새로운 轉換을 맞이하고 있다.

政府當局이나 廢棄物을 발생하는 企業들은 有毒性 廢棄物의 엄격관리와 廢棄物의 減量化·安全化·無害화를 위한 새로운 處理體制로 전환하

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같은 여려수단 중의 하나가 廢棄物法制의 資源化경향이다.

有毒性 廢棄物이 人間界에 미치는 영향과 生態系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위험성이 점차 새롭게認識됨에 따라 이를 專門적으로 다루게 될 法律을 制定하는가 하면, 이와같은 法制를 시행하게 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고 있다. 또한 廢棄物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高度의 전문적 기술의 도입과 시설설치 그리고 人間의 건강에 무해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제의 신설, 더불어 처리요원의 양성등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II. 外國 廢棄物法制의 資源化

1. 美國의 固形廢棄物處理法 (Solid Waste Disposal Act 1970) 등

(가) 固形廢棄物의 定義; 「固形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 그밖의 固形狀의 廢棄物로서 下水中的 固形廢棄物이나 廢水 속의 진흙찌꺼기 그 밖의 浮遊物質 등을 除外한 것」(同法 제 203 조 ④)으로 大氣污染으로 인한 氣體狀의 것과 放射性物質의 除外를 明白히 함으로써 固形廢棄物의 資源化를 유도하고 있다.

(나) 資源保存 및 資源回復과의 관계

1965년의 당초 固形廢棄物處理法은 그 收集·貯藏·化學的處理와 함께 그 活用을 포괄하는 (同法 제 203 조 ⑤) 정의를 내린 바 있으나 그후 1970년에 이르러서는 「處理」보다 「資源回復」에 역점을 두는 「資源回復法」(Resource Recovery Act)을 제정하여 위 固形廢棄物을 부분적으로 改正하여 그와 병용하면서 「廢棄物處分」 대신 「廢棄物管理」(Resource Management)라는 用語를 사용하여 廢棄物의 資源化回復과 再生利用 (Recovery and Recycling)을 포함시켰다. (同法 제 203 조) 또 관계 行政기관으로 하여금 廢棄物의 資源化回復등의 方法과 再利用 不可能廢棄物의 減量化 方案을 연구하게 하고 (同法 제 304 조), 廢棄物處理計劃樹立의 制度化를 하며, (同法 제 207~208 조) 위 方案을 수시로 大統領 및 議會에 보고하고 위 시설등

에 國庫補助등 각종 자원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다시 1976년에는 資源回復 뿐만 아니라 事前의
資源保存에 역점을 둔 資源保存 및 回復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을 제정함으로써 廢棄物의 規制도 事前豫防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나) 環境廳長의 權限 : 環境廳長은 事前豫防
의 規制로서 위험 廢棄物의 노천집적(Opendumping)의 금지(同法 제 4005 조), 除去命令權
(同法 제 3008 조), 市民訴訟(同法 제 7002 조),
再生利用不可能廢棄物의 購買(同法 제 6002조)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이외에도 廢棄物管理 전
반에 관한 指針書를 작성 발표하며, 資源化를 위
한 정책대안으로 원자재 사용에 대한 부과금제,
資源化回復施設에 대한 租稅特典, 再生利用 廢
棄物에 대한 운임상의 特典 등의 方案을 다각적
으로 논의하고 있다.

2. 英國의 環境汚染規制法 (Control Pollution Act. 1974)

이 法은 各 個別法을 그대로 둔채 廢棄物, 水
質污染, 騭音, 大氣污染까지 모두 109 개 조문에
이르는 綜合規制法으로 되어 있다.

(가) 廢棄物 處理計劃과 조치 : 處理當局은
廢棄物處理를 위하여 취한 조치가 處理目的에 적
합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廢棄物의 종류와
量, 再生處理 등의 處理方法과 處理費用의 가액
이 규정되어야 한다. (同法 제 2 조) 또한 處理는
그 地域住民의 保護를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이어야
한다.

(나) 廢棄物 收集과 處理 : 收集當局 (Collection Authority)은 가정 廢棄物 이외의 廢棄物의 收集을 요청한 廢棄物의 收集과 處理行爲
에 대하여 그 조치를 취한 당국에 대해 合理的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同法 제 12조④) 또한 어떤 종류의 규제받는 廢棄物이 매우 위험한 경우에는 特殊廢棄物 (Special Waste)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同法 제 17조)

(다) 廢棄物의 再利用 및 エ너ジ化 : 廉棄物處

理當局은 廢棄物을 再利用 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同法 제 20 조) 또한 廢棄物을 이용한 熱이나 電力を 生產하기 위하여 當局에 속한 廢棄物을 사용한 후 發電所나 기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거나 電力廳에 處分할 수 있다. (同法 제 21조)

3. 西獨의 廢棄物除去法 (Abfallbeseitigungsgesetz 1972 제정, 1977 改正)

이 法은 모든 廢棄物의 発생에서 최종처리까지 單一 法律로서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가) 廢棄物의 定義 : 이 法에서 「 廉棄物 」이라 함은 이동가능한 物件 (Bewegliche Sachen)



〈각국은 폐기물을 규제법제화에 힘쓰고 있다〉

으로서 占有者가 그를 버릴 意思가 있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질서있는 除去가 일반 公共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것 」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나) 基本原則과 除去原則 등 : 廉棄物의 處理에는 人間의 건강피해는 물론 하천·호수 등에
有害作用을 주지 않아야 하는 基本原則 (同法 제 2 조 ①) 과 除去原則으로서 廉棄物除去施設의
공동이용을 제공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도록 (同法 제 3 조 ⑤) 하며, 또한 관청은 合法上의 處理단체보다 경제적으로 廉棄物을 除去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同法 제 3 조 ②)

4. 프랑스의 廉棄物除去 및 材料回收에 관한 法 (1975)



(가) 廢棄物이 생기는 製品의 生產 및 分配：
廢棄物의 除去 (L'elimination des déchets)
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材料 또는 에너지를
回收 (La Récuperation)하고 (同法 제2조) 재
품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제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廢棄物이 除去되어야 할 성
질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同法 제5조)

또한 廢棄物이 생기는 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
한 보고, 발매 및 이용자의 활용은 당해 廢棄物
의 除去를 용이한 방향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제
품의 생산과 분배자로 하여금 정당한 보수를 조
건으로 廢棄物을 除去하거나 除去에 협력할 수
있다. (同法 제63조)



(나) 廢棄物의 除去；法令에 규정된 廉棄物을
제조·수입·운반 또는 除去하는 企業은 그 배
출 제3자에게 인도함에 있어서 그 자체가 담당
하는 출처·종류·특성·분량·용도 및 제거방
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행정당국에 제공할 의무
를 진다. (同法 제18조)

(다) 廉棄物의 回收；廉棄物의 除去는 모든 處
理段階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材料 또는 에너
지回收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
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환경보호 및 재료의 부
족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재료의 최소 回收比
率을 정할 수 있다. (同法 제15~18조)

(라) 廉棄物取扱所；環境과 資源保護에 기여
하기 위하여 國家公共機關인 「全國廉棄物取扱所」
를 설치운영하며, 이는 廉棄物의 除去 및 回收
活動을 조장하고 公益을 위하여 廉棄物의 除去

및 回收業務를 행한다. 동 取扱所는 그 임무수
행을 위하여 보조금 및 대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同法 제22조)

(마) 工業用廢熱의 回收；廢熱을 大氣中에 방
출하는 工業施設은 그 熱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고를 할 때에
는 廉熱의 放出量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3자
로 하여금 廉熱을 공동주택 또는 產業施設의 난
방용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同法 제24조)

III. 廉資源化를 위한 새 對策模索

첫째, 廉棄物法制의 單一化를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권 의식은 도시 廉
棄物이든 產業廢棄物이든 그 適正處理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와 지원법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의 환경권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개
별법의 취지를 모아 폐기량의 증대에 대비하여
매립지 확보, 처리기술, 비용 등이 강력히 반영
되는 새로운 통일된 단일법률의 제정을 바란다.

둘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구의
증설을 요망한다.

폐기물의 發生→收集→先別處理→資源化→운
반→中間處理→최종처리→소각→매립 등 새로운
各 管理段階에서부터 適正處理의 촉진은 물론
사전 환경영향평가, 종합적·광역처리체제로 전
환하기 위하여 廳의 1개 “科” 기능보다 “局”
기능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폐기물의 교환제도를 실현하는 폐기물
취급소의 운영도 바람직하다.

세째, 廉資源化를 위한 기술요원의 양성이 시
급하다. 아름답고 쾌적한 곳에서 거룩한 조국애
가 싹튼다고 전제할 때 이들에게 겨는 기대는 너
무나 크기 때문이다.

네째, 住民들에게 새로운 環境倫理觀을 심어
주어야 한다.

무심코 버린 폐기물이 곳곳에서 환경오염과
파괴로 보복해 온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게 함
으로써 地域住民에게는 새로운 환경관을, 전국민
들에게는 자원절약과 民主市民으로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